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,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488호, '23.6.20.공포, '23.12.21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(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(휴대전화번호)의 제공을 요청할 때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요청하고, 기간통신사업자 또한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

나.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의 준수사항을 정함(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)

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,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,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

정보이용의 준수 사항을 정함

다. 정보의 요청, 제공,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함

(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)

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,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정보제공 요청방법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.

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(이하 ‘정보’라 한다)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누구든지 정보를 산불,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
2.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
3.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

4.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
 5.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6.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
 7.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
 8. 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
 9.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를 것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,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2(정보제공 요청방법 등)</u>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.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,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(이하 ‘정보’라 한다)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1. 누구든지 정보를 산불,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.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

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

3.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

4.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

5.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6.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

7.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

8. 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

9.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를 것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,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

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자원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44